

#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

2016년 10월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

# I .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

# 현행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

국민안전 확보를 위해,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

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害수준에 따라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(자율안전확인) ③공급자격합성확인(안전·품질표시) 3단계로 차별하여 안전관리를 실시

안전인증

안전확인 / 자율안전확인

공급자격합성 / 안전·품질표시

높음



위해도

낮음

-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(‘1974.1.4, 제정) /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(‘1967.3.30, 제정)

안전인증  
50종(39/11)

제품시험+공장심사  
(안전인증 기관)

인증서 발급  
(인증 기관)

판매 (KC 마크)

(자율)안전확인  
94종(61/33)

제품시험  
(안전확인시험 기관)

시험결과신고  
(인증 기관)

판매 (KC 마크)

공급자격합성(안전·품질)  
116종(73/43)

제품시험  
(자체시험 또는 제3자)

공급자격합인서 작성

판매 (KC 마크)

## II.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통합 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)

# 현행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

구분

현 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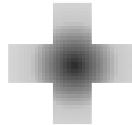
향 후

제품 출시 전

## 전기용품안전 관리법

### 전기용품 안전관리

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



##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

### 품질경영, 공산품 안전관리

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안전·품질표시

##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

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전기  
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 
(시행 : 2017.1.28일)

## 산업표준화법

품질경영 관련 부분은 산업표준화법으로  
이관하여 관리
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 
2017년 1월 28일 폐지

제품 출시 후

## 제품안전기본법

제품 사고조사, 리콜 명령 등

현행과 동일

#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적용 범위 요약

제조업자  
수입업자

## 판매자

- 제조자
- 수입자
- 판매자
- 대여자
- 구매대행업자
- 수입대행업자
- 판매중개업자
- 포털사업자(신규)

## 사용자

- 전기사업자(전기용품)
- 자가용전기설비  
설치업자(전기용품)
- 전기공사업자(전기용품)
- 영업자(공산품)

# 1.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

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임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
- 부품변경 경우, 인증취소 이외 벌칙규정이 없음

## (개선내용)

- 안전인증 후 중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현행 인증취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벌칙을 강화
- (개정)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+ 행정처분(인증취소)

## 2. 일회성 수입 또는 생산 제품 인증제도 신설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용품 수입업자가 외국시장에서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, 현행 「전안법」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
- \*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공장검사가 있어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일정수량일 경우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절차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
- 현행 「품공법」은 수입업자가 **일정수량만 제조·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 도입하여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**

### (개선)

- 일회성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하는 자에 대해 제품시험만으로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### 3. 임의 인증제도 폐지를 통한 규제 개선

#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안전관리 非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거쳐, 안전인증  
[관련근거 :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(그 밖의 전기용품안전인증)]
- 완제품 제조자가 인증 비대상 부품에 대해 납품 받을 때 과도하게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임의인증제도가 왜곡되어 운영되도록 규제 개선이 요구됨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

#### (개선)

- 동 안전관리법에서 임의인증의 법적 근거 삭제
  - \* 기 임의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효력은 유효
  - \* 승강기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이관 진행 중

## 4. 정기검사 주기 일치화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전기용품과 공산품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, 안전관리 규제수준을 고려할 때, 형평성이 맞지 않음
  - 현행 「전안법」에서는 매년 1회 실시
  - 현행 「품공법」에서는 2년에 1회 실시 \* 「어린이제품안전법」도 2년에 1회

### (개선)

-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일치화
- \*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제도 삭제

# 5. 인증제품의 표시규정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

## (현황 및 문제점)

- 현행 「전안법」에는 제품과 포장에 인증정보 표시를 규정하고 있어 소형 제품의 경우 표시공간 부족으로 인증정보 표시에 애로가 있음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, 개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도록 함

## (개선)

- 운용요령 또는 개별 안전기준에 따라 일부 조건에서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정보를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

(현행) 제품 + 포장

(개정) 제품과 포장, 일부 조건에서 제품 또는 포장(세부사항은 하위법령 규정)

\* 제품의 크기에 따라 표시사항 항목 등 조정

## 6.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내역 게시 의무 규정 신설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현행 「전안법」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, **인터넷상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**,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

### (개선)

-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, 인증 정보를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규정(위반시 과태료 500만원)

## 7.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인증제품 판매 의무를 부과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현재,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제품판매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 있으나, 통신판매 중개자(예, 옥션 등)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제품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

- \* 통신판매중개업자, 구매대행 ·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음, 다만,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\*「어린이제품안전법」에는 규정있음

### (개선)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①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, ② 온라인 몰에 상품등록시 안전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, ③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 (전기용품 : 3년이하의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, 공산품 과태료 500만원)

## 8. 시험기관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안전확인시험기관(또는 안전인증기관)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, 제조업자는 **시험기관의 업무정지**로 인하여 적시에 안전확인 시험을 하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

### (개선)

-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(3억원 이하)을 정부에 납부하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

## 9.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를 한 제품이 계속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(5년~10년)으로 제품시험을 받아 다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,
- 대부분의 제품출시 주기가 5년 이내이고, 「제품안전기본법」이 시행(‘11.2.5)됨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으로 시장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 고려

◦ (현행) 안전확인 유효기간(공산품 5년, 전기용품 5년~10년)

→ (개정)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

## 10.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 마련

### (현황 및 문제점)

- 시장 사후관리 결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표시 사용금지만 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
  - 불량제품의 추가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

### (개선)

-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및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**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규정을 마련**

# 11. 공급자격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신고제도 마련

## (현황 및 문제점)

-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**전기용품** 중 인증마크 표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
- 공급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'공급자격합성확인제도' 도입(12년) 되었지만, 시험없이 임의로 KC를 붙이는 악용사례 다수 발생
- 현행 「품공법」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

## (개선)

-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**전기용품**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(위반시 과태료 500만원)  
\* **전기용품**에 한하며, 공산품은 해당 없음

## 12. 기타 벌칙 규정 정비

(현황 및 문제점)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이 서로 다르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, 일부 규정에 대해 벌칙 규정이 부재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

(개선)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벌칙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,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

### ① 벌칙 규정 신설

- 안전인증을 받은 후,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(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)
- 인터넷판매제품에 대해 인증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(500만원 이하 과태료) 등

### ② 벌칙 규정 일치화

#### 예시)

-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경우  
(전기용품: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, 공산품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
→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)
-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 
(전기용품: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, 공산품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
→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일치화) 등

# **통합법 시행령 개정(안) 내용 소개**

## 1.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절차 마련

- (개정이유) 법에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관련 세부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절차 등을 마련
  - (개정내용) 위원장·간사·서기임명, 회의출석 및 개회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 세부사항 규정
- \* 동, '제품안전심의위원회' 관련 규정은 현행 「품공법」에서 운영하고 있는 '공산품안전심의원위원회' 운영 규정과 유사하게 작성

## 2.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정

- (개정이유) 일부 인증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, 인증기간이 지연되는 등 일시적으로 인증기관의 장비나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
  - \* 산업기술시험원, 화학융합시험연구원,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개 인증기관을 운영
- (개정내용)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분야 중
  - 6개 분야(1/2) 시험능력적합에서 4개 분야(1/3) 시험능력적합으로 변경하고,
  -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가인증기관(NCB) 요건을 삭제하며,
  - 인증심사원 보유기준을 5명에서 2명으로 변경
  - 외국소재 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

### 3. 공급자격합성확인 면제확인 규정 정비

- (개정이유) 연구, 전시 목적 등으로 수입하는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수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면제확인 제도를 법률에서 도입하였는 바, 세부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
  - (개정내용)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
- \* (현행)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격합성확인서, 시험성적서,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
- (향후) 면제확인을 통해,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 인증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없음

## 4. 정기검사 관련 규정 정비

- (개정이유) 정기검사 주기가 매년 1회에서 2년 1회로 변경되고, 수입업자가 안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
    - \* 현행은 국내·외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으므로 제조자가 정기검사를 받음
  - (개정내용)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
    - 제조자가 안전인증 - 제조업자가 정기검사
    -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- 수입업자가 정기검사를 주관
  - 정기검사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사후 관리 부적합 실적이 있는 업체는 불시에 공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,
  -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\* 관련 내용은 삭제
- \* 2년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 적합한 경우, 그 다음해 정기검사를 1회 면제  
(즉, 3년에 1회 면제)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나, 개정법률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

## 5.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

- (개정이유) 안전인증기관 등의 업무정지가 업계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, 그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(3억이하)을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
- (개정내용) 1일당 납부해야 할 과징금과 납부방법 등을 규정
  - 업무정지 1일당 납부해야 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200만원으로 함
  - \*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1일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

## 6. 수수료 규정 정비

- (개정이유) 공급자격합성확인신고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처리를 위한 수수료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필요

- \* ‘07년 어린이보호포장신고제도 도입하였으나 수수료 규정 없이 운영
  - ’16.7월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53건, 최근 3년간 신고건수는 평균 6건

- (개정내용) 공급자격합성확인신고(변경) 및 어린이보호포장신고(변경)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규정 함

- 공급자격합성확인신고(변경) 수수료 : 건당 10,000원(변경 10,000)

- \* (회계법인의 신고업무 수수료 산출내역) 업무량에 따른 수수료 계산 예
  - . 신고업무 수수료 : 17,115원, 변경업무 수수료 : 12,688원으로 산정됨

- 어린이보호포장신고(변경) 수수료 : 건당 50,000원(변경 10,000)

- \* 현재, 유사한 업무인 안전확인신고 수수료를 건당 50,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

## 7. 과태료 규정 정비

- (개정이유) 서로 다른 두 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과태료를 일치되게 정비
  - (개정내용)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업자기업규모(10, 50, 100, 300명)로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, 법에서 신규로 도입된 과태료는 유사한 항목과 동일하게 규정
    - \* 전기용품 공급자격합성 신고 위반은 생활용품의 안전품질 표시위반과 동일하게 규정하고, 인증정보 게시 위반은 생활용품의 인증표시 위반과 동일하게 규정
- (상세사항은 시행령 개정안 참고)

# **통합법 시행규칙 개정(안) 내용 소개**

## 1.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동일한 체계로 안전관리

- (개정이유)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규정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에서 사용하는 “모델”, “기본모델”, “파생모델” 용어를 정비
  - 생활용품은 안전기준(고시)에서 모델구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에서 모델구분 방법 규정이 필요
- (개정내용) 용어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범위를 현행 “전기용품”에서 “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변경
- 고시에서 규정하던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규정
  - 예) 가스라이터의 모델구분 방법(현행, 국가기술표준원장 고시)
    - 안전인증대상 안전기준 → 부속서 5 가스라이터 → 제3항에서 규정
    - 모델구분: 종류(일반용, 일회용), 형식(전자식, 돌식, 터보식, 토치형), 구조(불꽃높이, 조절방식, 연료탱크, 용적, 외형), 재질

## <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예>

분야		모델 구분
1) 화학	가)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(트레드 고무를 포함한다)	용도, 구조, 모양, 종류
2) 생활	가) 가스라이터	종류, 형식, 구조(불꽃높이 조절방식, 연료탱크 용적, 외형), 재질
나) 물 놀이 기구	(1) 제1부 : 공기주입 물놀이기구	종류, 모양, 크기, 재질
	(2) 제2부:공기주입 보우트	종류(인원수),모양,크기,재질
	(3) 제3부 : 수영보조용품 (착용형)	종류, 모양, 크기(연령), 재질
	(4) 제4부 : 수영보조용품 (비착용형)	모양, 크기(연령), 재질
다) 비 비탄총	(1) 청소년	모양
	(2) 성인	모양, 재질

## 가) 가스라이터

### ○ 종류

- 일반용 가스라이터(재충전가능 구조),
- 일회용 가스라이터(가스 또는 발화석 재충전 불가능구조)

### ○ 형식 : 전자식, 돌식, 터보형식, 토치형식

### ○ 구조

- 불꽃높이 조절방식 : 조절식, 비조절식
- 연료탱크 용적 : 10mL 이하, 10mL초과
- 외형 : 장난감형태, 비장난감형태

### ○ 재질

- 합성수지 : ABS, 폴리스티렌, 폴리프로필렌 등
- 금속 : 철, 알루미늄, 합금 등
- 기타 : 재질명 표시

## 2.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하여 규정

- (개정이유)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하나의 법으로 관리됨에 따라,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
  - (개정내용) 현행, 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안전인증대상, 자율안전확인대상,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” 을 현행과 동일한 규제수준인 “안전인증대상, 안전확인대상,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
- \* (현행)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합 증빙 자료보관 의무 없음  
(향후) 공급자격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적합 증빙 자료보관 의무 있음
- \*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미비점 개선

- 법 제5조에서 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파생모델 등록 실시

### (방법)

- 제조자 제시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, 나머지는 파생모델로 결정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서 변경을 요청
- \* 향후에는 제조자 제시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, 파생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등록하여야 함

### 3. 시험·인증기록 보관 관련 규정 구체화

- (개정이유) 시험·인증기록 보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며, 전산 기록 관련 규정이 없어 시험인증기관은 종이 문서와 전산기록을 동시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종이 문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음
  - \* 현재, 안전인증기관은 약 10만건(약 1,500만 페이지) 정도의 종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며, 보관 장소 등의 제약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(개정내용) 기록 보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전산기록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문서로 규정하여 보관의 편의성을 제공

## 4. 일회성 수입 또는 제조제품의 인증 절차 마련

- (개정이유) 수입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는 바,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
  - \* 안전인증은 공장심사가 있어 외국의 시판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수 없으므로 제품을 소량으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어려움이 있었음
- (개정내용) 일회성으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하고,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
  - 전기용품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안전관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100개 이하로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

## 5. 병행 수입업자의 안전인증 절차 마련

- (개정이유)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타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
  - \*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타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, 리콜 등 사후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
- (개정내용)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병행 수입업자가 인증을 신청할 경우,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일부만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병행 수입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(최초 수수료의 10%~30%정도 부담)
  - \* 수입업자 A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, 수입업자 B는 제품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수입업자 B명의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

## 6. KS인증 제품의 KC인증 면제제도 개선

- (개정이유)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인증 받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(KC)을 면제하고 있으나, KS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여 통관 및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
  - KC인증대상 제품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KC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통관할 수 없으나, KS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은 세관장확인 없이 통관
- (개정내용) 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하되, 제품의 사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함
  - 「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 받을 수도록 규정

## 7.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화

- (개정이유) 안전인증 받은 후 제품이 변경될 경우,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법률에서 인증서변경 의무를 부과하고,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 바,
  -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
- (개정내용) 전기용품의 색상, 변압기 2차측의 회로·부품·절연·난연을 위한 재질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
-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변경 신청을 하여 인증서를 변경 받아야 함
  -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(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)

## 8.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인증정보 표시절차 규정

- **(개정이유)**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인증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
- **(개정내용)**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\*와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

\* 인증정보 : 인증마크, 인증번호, 제품명, 제조업자명, 수입업자명, 모델명 등 6개

## 9.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관련 규정 정비

- (개정이유)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필요
- (개정내용)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 
“안전확인 표시사용금지 6개월” 을 “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”로 변경

## 10.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공급자격합성확인

- (개정이유)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,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,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

(개정내용) 공급자격합성확인신고(변경) 절차 및 수수료를 규정

### 1) 공급자격합성확인 절차

#### <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 적합성확인서를 작성>

- (포함내용) 확인자, 제조업자, 대상제품 등에 대한 양식을 작성하고, 서명
- (첨부서류) 제품설명서, 시험결과서
  1. 제품설명서(사진을 포함합니다)
  2. 시험결과서(정격, 전기회로 도면,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,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,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,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)

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16.00.00>

## 공급자적합성 확인서

확인자	회사명 대표자 주소	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/팩스번호
제조업자	회사명(국가) 대표자 주소	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/팩스번호
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	제품명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	제품정격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적용안전기준

상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이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3항  
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제품설명서(사진을 포함합니다) 2. 시험결과서(정격, 전기회로 도면,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,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,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,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 함)
------	--

\*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## 11.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절차

### <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작성>

#### 1. 공급자 적합성확인서작성

: 전기용품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작성

#### 2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작성

: 별지양식에 따라 작성

#### 3.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 협회 접수 (첨부서류: 공급자적합성확인서)

: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서를 협회에 접수(온라인, 팩스 등)

#### 4. 협회의 확인 및 결재

: 제품명, 정격, 적용안전기준, 제조업자, 신고인 등 작성된 것 확인  
사업자등록번호 이용 신청자료 확인(국세청 흠텍스 이용)

#### 5. 확인증명서 작성

: 확인 후 신고서에 작성된 사실이 이상 없으면 확인신고 증명서 작성

#### 6. 확인증명서 발급

(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,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변경 요청)

##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

(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7일
신고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제조업자	회사명(국가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대상	제조자명	제품명	
	기본모델명	제품정격	
	전기용품	파생 모델명(필요시 별지사용)	적용안전기준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  
(서명 또는 인)

신고인

한국제품안전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별지 제19호 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(첨부서류 제외)	수수료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5조 별표 5 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\* 공급자적합성 확인 신고는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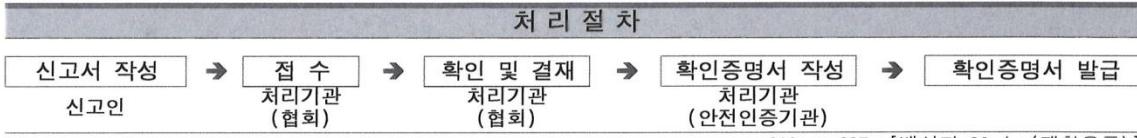
일련번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0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한국제품안전협회장

직인



210mm × 297mm [백상지 80g/m<sup>2</sup> (재활용품)]

### 개정 내용

- 특허제품, 특수구조용품 등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완화  
(안 제12조제2항, 제30조제2항)
- 공장심사는 합격하였으나,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,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인증을 신청하면 공장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업계의 인증부담을 완화(안 별표 7)
-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은 제품 중 **제품이 소형이거나 수출용 제품**에 대해서는 **면제확인 표시라벨 부착의무를 삭제하고**(안 별표 8)  
- 면제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작성이 어려운 “**용도설명서**”를 첨부서류에서 **삭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**
- 기타, 「품공법 시행규칙」에서 운영하던 “어린이보호포장신고” 절차를 통합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

# **통합법 운용요령 개정(안) 내용 소개**

# 1. KS 인증 제품의 안전인증서 및 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절차

- (개정이유) KS 인증제품도 안전 인증서 등을 발급받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,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마련
  - \* KC인증은 모델 별로 받지만 KS인증은 범위 별로 받음
- (개정내용) KS인증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만 면제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므로, 향후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KS인증 제품은 불법 제품임
  - \* KC인증은 없고, KS인증만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서 및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
- (신청방법) 안전인증(안전확인신청서)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신청 : KS인증서, 사업자등록증사본, 전기회로도면 및 부품명세표, 안전인증 표시라벨
- (기본모델 또는 파생모델 결정) 최초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하나의 모델을 기본모델로 하고 나머지는 파생모델로 정하여 신청

- (세부안전기준 적용배제)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KC인증제도에서 적용하는 세부안전기준을 적용을 배제하고 KS인증 범위 내의 제품을 모두 파생모델로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KS인증 업체에 대한 부담 최소화
- \* 이 경우, 인증이 취소될 경우에는 모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
- (정기검사)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, 정기검사시 최근 1년이내의 공장심사 또는 해당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면제

## 2. 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절차 마련

- (개정이유) 수입업자도 안전인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, 수입업자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
- (개정내용)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인증 받은 제품이 공장심사 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

### 3. 기타 제도 통합을 위한 사안

- 제품심의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후보자가 위원으로써 직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
- 해당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절차 마련

# 향후 추진 계획

- 시행령(안), 시행규칙(안) 마련('16. 1~9월)
- 관련 고시(운용요령)안 마련 ('16. 1~9월)
- 하위법령(안) 입법예고 ('16. 9~11월)
-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('16. 11~12월)
- 하위법령 공포('16. 12월) 및 시행('17. 1. 28)

#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 문의처

국가기술표준원 : 043-870-5441(전기용품), 043-870-5451(생활용품)

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: 031-428-8401(전기용품), 031-428-7347(생활용품)

한국산업기술시험원: 02-860-1366(전기용품, 생활용품)
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: 02-2164-1413(전기용품), 02-2164-1423(생활용품)

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: 02-2102-2627(생활용품)

KATRI : 031-596-5781 (생활용품)

FITI시험연구원 : 02-3299-8001 (생활용품)

KOTITI시험연구원 : 02-3451-7442 (생활용품)

한국제품안전협회 : 02-890-8300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불법 불량제품 신고)

# 감사합니다